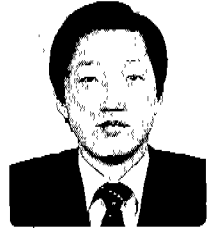


## 부가가치세분야 ②



글/ 임현석 세무사

###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Q.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여 주는 역할만 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카드매출의 경우 그 매출이 본 사업체의 매출로(상품판매가액+수수료) 100%신고하여야 맞는지, 아니면 카드매출을 무시하고 수수료 부분만을 정산하여 매출로 계산하여야 맞는지요? 매출의 경우 상품판매가액 및 수수료에 대해 본업체의 명의로 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A. 1. 사업자가 통신판매나 인터넷 쇼핑물 운영기업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수탁판매계약시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수탁 매매 대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입니다.

### 9. 부동산임대 과세표준 포함 여부

Q. 빌딩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구청으로 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본인은 세입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 때 세금계산서를 세입자에게 발행하여 주어야 하는지요?

A.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종합토지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하기로 한 “도로점용료”의 납부기일입니다

### 10.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Q. 甲법인은 乙소유의 토지를 보증금4억원, 월 임대료5백만원에 임차하여 토지소유자인乙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5년간 사용하고乙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사용수익기부 자산에 대하여 甲법인과 토지소유자乙는 각각 부가가치세를 언제, 얼마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A. 임차인인 甲법인은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 소유자인 乙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토지 소유자인 乙는토지 임대 용역을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甲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영세율 과세표준

Q. 영세율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선적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는데 선적일이 일요일인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A.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므로 선적일의 외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이며, 선적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1.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Q. 당사는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완성,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업체로서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업자로부터 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요?

A. 1.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

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2.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확정되는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12.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Q. 본점은 도.소매업이며, 지점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지점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본점으로 반출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공장에서 직접 판매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본점에서 일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요?

또한 지점의 사업자등록전에 제조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제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인도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사는 본사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존사업장의 사업내용에 관계없이 신설사업장뿐만이 아니라 기존사업장에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